**크리스패션 시험분석신청서**

**(KS/KC/GB안전요구)**

|  |  |  |  |  |
| --- | --- | --- | --- | --- |
| **접수번호** | 일반 |  | **GB 18401 분류** | [ ]  A류 : 유아용품(36개월 이내)[ ]  B류 : 피부접촉성 제품[ ]  C류 : 비피부접촉성 제품 |
| GB |  |
| **신청자** | 회사명 |  |
| 주소 |  | **KC적용****품목** | [ ] 유아복 [ ] 아동복[ ] 내의류 [ ] 중의류 [ ]  외의류/침구류[ ] 천연가죽 [ ] 인조가죽 [ ]  천연모피 |
| 담당자 |  | Mobile |   |
| TEL |  | E-mail |  |
| **브랜드** | [ ]  **PING** [ ]  **FANTOM** [ ]  **PEARLY GATES** [ ]  기타 ( ) |
| **Style No.** |  |
| **Color 명** | (A) (B) (C) (D) |
| **혼용률** |  |
| **성적서 발급****(접수일 포함)** | [ ] [ ] [ ]  | 보통(4일)지급(3일) 입회(2일) | **세탁****방법** |  |
| **시험항목** | **시료수** | **시험방법** | **시험항목** | **시료수** | **시험방법** | **비고** |
| **혼용률** |  |  | **물****성****시****험** | 필링 |  |  |  |
| **염****색****견****뢰****도** | 세탁 |  |  | 스낵성 |  |  |
| 마찰 |  |  | 인장강도 |  |  |
| 땀 |  |  | 인열강도 |  |  |
| 일광 |  |  | 마모강도 |  |  |
| 드라이클리닝 |  |  | 번수 |  |  |
| 물 |  |  | 실미끄럼저항도 |  |  |
| **치수변화** | 드라이클리닝 |  |  | **완제품** | 내세탁성 |  |  |
| 손세탁 |  |  | 내드라이클리닝성 |  |  |
| 기계세탁 |  |  | **KC** | **섬유제품** |
| 스팀아이론 |  |  | pH |  |  |
|  ***ㅎ GB*** | ***GB18401(섬유)*** | 폼알데하이드 |  |  |
| *pH* |  |  | 아릴아민 |  |  |
| *포름알데히드함량* |  |  | 프탈레이트가소제 |  |  |
| *아조염료*  |  |  | 납 |  |  |
| *땀견뢰도* |  |  | 카드뮴 |  |  |
| *마찰견뢰도* |  |  | 니켈용출 |  |  |
| *물견뢰도* |  |  | 알러지성염료 |  |  |
| *냄새* |  |  | 유기주석화합물 |  |  |
| *혼용률* |  |  | **가죽제품** |
| ***GB20400(가죽)*** | 폼알데하이드 |  |  |
| *포름알데히드함량* |  |  | 6가 크로뮴 |  |  |
| *아조염료* |  |  | 염소화페놀류(PCP) |  |  |
| *소재감별* |  |  | 다이메틸푸마레이트 |  |  |

※ 혼용률 등은 시험 결과에 따라 추가 수수료가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 브랜드, 스타일번호, 색상명, 혼용률, 세탁방법 표시는 필수 기재사항 입니다.**

 **KOTITI시험연구원 약관**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및 적용 범위)** ① 이 약관은 섬유, 수질, 식품, 전기전자제품, 화장품, 의약외품 및 기타 관련 제품에 대하여 사단법인 KOTITI 시험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시험/검사, 검사 (이하 ‘시험/검사’라 한다)에 관하여 시험/검사의 신청, 실시 및 성적서 발급 등 시험/검사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함과 아울러 시험/검사와 관련하여 연구원과 시험/검사를 신청한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 사이의 권리․의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이 약관은 연구원이 신청인의 신청이나 의뢰에 따라 국내외에서 실시하는 모든 일반 시험/검사에 대하여 적용된다. 다만, 연구원의 인증(안전인증 등)에 대하여는 이 약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특별약관 등 별도의 정함에 따른다.

**제2조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아래 각 호와 같다.

 1. ‘시험/검사’ 라 함은 연구원이 섬유, 수질, 식품, 전기전자제품, 화장품, 의약외품 및 기타 관련 제품(이하 ‘원재료’ 라 한다)에 대하여 실시하는 이화학적․위생공학적․물리학적․미생물학적 또는 생태학적 측정․검사․분석․검정 또는 검토를 말하며 의뢰검사와 의뢰시험/검사분석 및 감정 등을 포함한다.

 2. ‘시험/검사의 신청’이라 함은 개인․단체․법인이 연구원에 시험/검사의 실시를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3. ‘시험/검사계약’이라 함은 신청인이 연구원에 시험/검사를 신청하고 연구원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연구원과 신청인 사이에 체결되는 시험/검사 실시에 관한 계약을 말한다.

 4. ‘시료’라 함은 시험/검사 대상물 등에서 시험/검사의 실시를 위해 추출한 물건을 말한다.

 5. ‘모집단’이라 함은 ‘시료’인 제품이 속한 동일한 종류의 제품 집단을 말한다.

 6. '시험검사원 ‘이라 함은 연구원의 피용인 또는 수임자의 지위에서 구체적인 시험/검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자연인을 말한다.

 7. ‘성적서’라 함은 연구원이 실시한 시험/검사의 결과(성적)를 기재한 보고 서면을 말한다.

**제2장 시험/검사계약**

**제3조 (시험/검사계약의 체결)** ① 시험/검사계약은 신청인이 소정의 ‘시험/검사분석신청서’, ‘시험/검사검사신청서’ 등 연구원의 소정 신청서 양식(이하 ‘신청서’라 함)에 의하여 시험/검사를 신청하고 연구원의 신청접수 부서에서 접수를 완료하거나 신청인과 연구원이 ‘시험/검사분석계약서’, ‘의뢰시험/검사약정서’ 등 서면으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전항의 신청 접수 또는 별도 계약 체결에 의하지 아니한 신청, 합의나 계약은 시험/검사계약으로서 효력이 없다.

③ 제1항의 신청 접수 또는 별도의 계약 체결에 의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인의 시료 제출, 연구원의 시료 보관, 시험/검사의 실시 등 행위가 있다고 하여 이로써 시험/검사계약의 체결을 갈음하거나 연구원을 법적으로 구속할 수 없다.

④ 제1항의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 및 제17조의 성적서에 기재된 사항 외에 신청인이 시험/검사계약의 체결에 있어 연구원의 적법한 대리인이 아닌 시험검사원과 별도로 합의하였거나 그 시험검사원이 신청인에게 제시․약정한 사항은 시험/검사계약의 조건이나 내용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⑤ 제1항의 시험/검사계약을 체결한 신청인 외의 자에 대하여 연구원은 법적 의무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4조 (연구원의 거절․해제 등)** ①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 연구원은 신청서의 접수를 거절하거나 시험/검사계약의 체결에 불응할 수 있고, 아래 각 호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 내지 확인되고, 연구원의 귀책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미 체결된 시험/검사계약이라도 이를 해제하거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그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전란, 노사분규, 법령의 규제, 무역분쟁, 연구인력이나 재료 확보의 어려움, 기계․설비의 고장, 화재 기타 사고로 인하여 시험/검사를 시행․완료하기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시험/검사의 실시가 연구원의 내부 규정,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경우

 3. 시험/검사를 실시할 가치(필요)가 적거나 시험/검사 목적의 부당성 기타 시험/검사 실시에 부적절한 사유가 있는 경우

 4. 연구원이 시험/검사를 실시할 기술적인 여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② 전항의 시험/검사계약 해제 또는 기간 연장은 신청인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③ 신청인은 제1항에 따른 연구원의 거부․해제 또는 기간 연장이 연구원의 고의•중과실이 없는 한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연구원의 조치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연구원의 고의•중과실이 없는 한 연구원은 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제5조 (시험/검사의 신청)** ① 신청인은 시험/검사를 신청함에 있어 신청서에 아래 각 호의 사항들을 진실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별도의 부전지(을지)를 사용하여 충분하고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1. 신청서에 기재하도록 정한 사항

 2. 시험/검사의 시행착오 또는 오류를 피하거나 시험/검사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연구원이 특별히 유의하거나 알아야 할 사항

 3. 시험검사원의 건강, 보건,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② 신청인은 신청서에 기재한 사항이 진실함을 보증한다.

③ 신청인은 신청서에 기재한 사항에 허위 또는 부실한 내용이 있거나 그 기재를 누락․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사태(시험/검사의 시행착오, 시험/검사비용의 증가, 시험/검사의 오류, 시험검사원에 대한 위해, 건강 침해 등)에 대한 손해배상 등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진다.

**제6조 (시험/검사계약의 해지)** ① 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시험/검사에 착수한 후라도 시험/검사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연구원이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그 시정을 최고하였으나, 신청인이 그 최고를 받은 날로부터 10 영업일 내에 시정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시험/검사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신청인이 파산, 법정관리, 화의, 중요자산에 대한 가압류, 압류 기타 소송을 당하여 연구원에 지급할 수수료 등 시험/검사 비용을 충당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신청인은 연구원이 시험/검사에 착수하기 전 또는 그 후에라도 시험/검사 실시가 종료(성적서의 발급 이전에 실질적인 시험/검사 절차가 종료된 단계를 말한다)되기 전에는 그때까지 소요된 수수료 비용 전액을 지급(정산)하고 시험/검사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본 조의 시험/검사계약 해지는 해지의 취지와 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상대방에게 통보하는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④ 본 조의 해지에 대하여 제4조 제3항, 제4항을 준용한다.

**제3장 시험/검사 비용**

**제7조 (수수료 비용의 종류와 산정)** ① 신청인은 시험/검사 실시에 대한 대가로 연구원에 수수료를 지급한다.

② 수수료는 기본수수료와 실시수수료 기타 연구원이 정한 항목으로 구성된다.

③ 수수료의 가액은 연구원이 당해 시험/검사의 항목, 복잡성․난이도, 소요시간, 인건비 등 물가수준 등 제반 요소를 고려하여 정한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④ 제5조 제3항, 제11조 제4항, 제13조 제2항 및 기타 연구원의 과실에 의하지 아니한 사유로 비용이 증가한 경우 연구원은 그 증가한 비용 전액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⑤ 시험/검사가 연구원 외의 장소에서 실시되거나 시험/검사를 위하여 출장이 필요한 경우 연구원은 수수료 외에 연구원이 정한 여비규정에 의한 출장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제8조 (수수료 비용의 지급 시기와 방법)** ① 수수료는 신청서를 접수하는 단계에서 선지급한다. 다만 연구원은 당해 시험/검사의 특성 기타 수수료의 가액을 미리 정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을 경우 시험/검사 실시 중 또는 종료 후에 그 가액을 산정하고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시험/검사 실시 중 또는 종료 후에 후불로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 출장비는 연구원의 청구를 받는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전항들에도 불구하고 연구원은 신청인에게 수수료 비용을 선지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후불로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④ 일체의 수수료 비용은 대한민국의 원화로 표시된 현금 또는 시중은행 발행 자기앞수표, 무통장입금, 신용카드 등 연구원이 정하는 지불수단으로 납부한다. 다만 신청인이 외국인, 비거주인, 공공기관일 경우에는 외화로 지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환율은 연구원과 신청인이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제9조 (수수료 비용의 담보)** ① 연구원은 신청인으로부터 수수료 비용을 완제 받지 못한 경우 시험/검사의 실시, 성적서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유예할 수 있다.

② 연구원은 수수료 비용 및 이에 대한 연체이자의 변제를 위하여 아래 각 호의 물건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1. 신청인이 시험/검사의 실시와 관련하여 연구원에 제공한 시료 기타 일체의 물건

 2. 연구원이 시험/검사의 실시와 관련하여 보관하게 된 시료 기타 일체의 물건

③ 유치권이 미치는 전항의 물건은 그 소유권이 신청인이 속하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④연구원은 유치권의 대상인 물건이 보관하기에 부적절하거나 시간의 경과에 따른 가치 하락의 정도가 심한 경우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그 물건으로 직접 변제에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미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신청인이 이 약관 및 상법, 기타 법령에 따라 연구원에게 지급하거나 배상하여야 할 모든 채무의 변제에 대하여 준용된다.

**제10조 (시험/검사 비용의 정산 및 환불)** ① 신청인의 요청에 의하여 시험/검사 진행이 중단된 경우 이미 지급된 시험/검사 수수료, 출장비의 정산은 아래 각 호에 따른다.

 1. 시험/검사 수수료 : 기본수수료(시험/검사를 접수함에 있어 기본적으로 책정되는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하고 실시수수료(실제 시험/검사 수행을 위해 각 시험항목 별로 책정한 수수료 등)는 연구원이 정한 기준에 의하여 정산한 금액을 공제하고 반환한다.

 2. 출장비 : 출장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그 전액을, 출장에 착수한 경우 출장기간 등을 고려하여 연구원이 정한 기준에 의하여 정산한 금액을 공제하고 반환한다.

② 제8조 제1항 단서, 제3항에 따라 수수료 비용을 후불로 지급하게 할 경우 연구원이 신청인으로부터 받아야 할 정산금액의 산정에 대하여도 전항을 준용한다.

③ 제6조에서 정한 연구원 또는 신청인의 시험/검사계약 해지에 의한 시험/검사 중단의 경우에도 제1항, 제2항을 준용한다.

④ 제4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연구원의 철회에 의하여 시험/검사 착수 전에 시험/검사계약이 철회된 경우에는 수수료 전액을, 시험/검사 착수 후에 시험/검사계약이 철회된 경우에는 기본수수료는 전액을 반환하고 실시수수료는 연구원이 정한 기준에 의하여 정산한 금액을 공제하고 반환한다. 출장비에 대하여는 제1항 제2호를 준용한다.

⑤ 본 조에 따른 수수료 비용의 정산 및 환불 의무는 신청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5년 내에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제4장 시험/검사의 실시**

**제11조 (시험/검사의 실시)** ① 시험/검사는 연구원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시기와 장소에서 실시한다. 다만 신청인이 특정 시기와 장소에서 실시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그 요청이 적절할 경우에는 그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험/검사의 방법은 신청인이 제시하거나 신청인과 협의하여 연구원이 정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시한 방법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연구원은 다른 시험/검사 방법을 정할 수 있다.

③ 신청인이 제시하는 방법에 의하여 시험/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신청인은 시험/검사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적절하고 충분한 시험/검사 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 신청인이 전항의 시험/검사방법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연구원은 전적으로 연구원의 판단에 따라 시험/검사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경우 또는 신청인이 시험/검사방법의 선택을 연구원의 재량에 위임한 경우, 연구원의 시험/검사방법이 업계의 통상적인 방법 및 수준에서 벗어난 것이 아닌 이상, 신청인은 시험/검사방법의 선정과 관련하여 연구원에 일체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제12조 (시험/검사의 중단, 보류)** ① 연구원은 제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로써 연구원의 귀책사유를 인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시험/검사의 실시를 중단하거나 보류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시험/검사 중단, 보류가 장기화되어 시험/검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신청인 또는 연구원은 시험/검사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3조 (시료 등의 제공)** ① 신청인은 연구원에 시료 또는 시료가 속한 물건을 제공함에 있어 시험/검사의 조건에 적합하고 안전한 상태로 제공하여야 한다.

② 신청인은 전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모든 사태(시험/검사의 시행착오, 수수료 비용의 증가, 시험/검사의 오류, 시험검사원에 대한 위해, 건강 침해 등)에 대한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진다.

③ 신청인은 제공하는 시료 또는 시료가 속한 물건에 대하여 연구원의 시료 채취, 시험/검사 실시, 유치권의 행사에 장애가 되는 일체의 권리 주장이나 법적 장애가 없을 것을 보증한다.

**제14조 (시료 제공․채취의 요구)** ① 연구원은 신청인에게 시험/검사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시료의 제공 또는 채취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은 연구원이 신청인으로부터 이미 시료를 제공받은 경우에도 적용된다.

③ 연구원은 제1항의 시료 제공 또는 채취를 요구함에 있어 연구원이 정하는 대상, 종류(외관검사 결과에 대한 참고용, 불량견본 시료 등 포함), 분량, 방식(무작위 샘플링 등 포함)에 의한 시료의 제공 또는 채취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연구원은 제1항의 시료 채취에 있어 시료의 적절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료가 속한 모집단의 물건에 대하여 열람, 분류, 조사, 검색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 시험/검사를 위하여 신청인이 연구원에 제공하거나 연구원이 채취한 시료 및 시료를 채취하고 남은 것으로서 연구원이 보관하는 제품, 물건은 신청인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연구원의 소유에 속한다. 다만, 이 경우 연구원은 신청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회수 의사를 물은 후 그 기간 내에 신청인이 특별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연구원이 보관하는 신청인의 제품, 물건의 소유권은 연구원에게 속한다는 뜻을 명확하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15조 (시료의 처분․폐기)** ① 시험/검사 실시로 파손․소멸되지 않은 시료는 신청인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신청인 기타 권리자의 소유권 기타 일체의 권리가 포기된 것으로 간주하고, 연구원의 관련 내부 규정에 따라 파쇄․폐기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연구원은 사전에 신청인 기타 권리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신청인 기타 권리자가 특별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소유권은 연구원으로 이전된다는 뜻을 명확히 고지하여야 한다.

② 연구원이 시료를 채취하고 남아 보관 중인 제품, 물건에 대하여도 시료 채취 완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의 반환 요구가 없을 경우에는 전항을 준용한다.

③ 연구원은 전항들에도 불구하고 부패, 오염, 파손 등의 사유로 보관이 어렵거나 건강․안전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폐기 등 처분을 할 수 있고 사후에 그 사실을 신청인이게 고지하도록 한다.

④ 전항들에 따라 시료 기타 물건을 폐기 등 처분하는 경우 그 비용이 통상의 수준을 벗어나는 것이고, 비용의 과다가 물건의 본래적 특성이나 하자에 기인한 것으로써 기타 연구원의 과실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의한 경우 신청인이게 그 회수의무를 부담시키고 그 비용 전액을 신청인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16조 (재시험/검사)** ① 신청인은 연구원의 분류상 ‘의뢰검사’에 속하는 시험/검사에 한하여 시험/검사 결과 통지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시험/검사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연구원은 전항의 재 시험/검사 청구가 있을 경우 시험/검사의 특성상 재시험/검사가 불가능․곤란하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이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본 조의 재 시험/검사는 재시험/검사로 소요되는 수수료 비용의 지급을 면제하지 않는다. 다만 연구원이 재시험/검사를 실시한 결과 최초의 시험/검사 결과와 중요한 부분에서 상이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그 귀책사유가 연구원에 있음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재시험/검사와 관련한 수수료를 면제 할 수 있다.

**제5장 성적서**

**제17조 (성적서의 발급)** ① 성적서는 연구원이 정한 양식에 따라 원장의 명의로 정본 1부로 발급된다.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아래 각 호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연구원은 성적서 부본을 복수로 발급하거나 정본을 분할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성적서 정본 발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인의 부본 발급신청이 있을 경우

 2. 시료 또는 시험/검사항목이 다수로서 1부의 성적서로 발급하는 것이 부적절하여 연구원이 직권 또는 신청인의 요청에 의하여 분할 발급하는 경우

③ 전항에 따라 성적서 부본 또는 분할성적서를 발급하는 경우 그 부본 또는 분할성적서의 전체 발급 수량 대비 당해 성적서의 순번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본 조에서 정한 방식 이외의 방식으로 발급된 성적서는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연구원의 성적서로서 인정되지 아니한다.

**제18조 (성적서의 사용 제한)** ① 신청인은 연구원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아래와 같은 용도로 성적서를 공개․사용․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방송․신문․잡지 등 언론을 통한 보도(공표) 또는 홍보(광고)

 2. 상품의 판촉용 광고, 홍보 활동에의 이용

 3. 각종 제조자 단체, 소비자 단체, 기타 시민단체에 대한 제공

② 전항의 공개․사용․제공 금지는 성적서의 전재 외에 일부 게재(설명), 요약 게재(설명), 사진 또는 영상의 현출 등 방식으로 공개․사용․제공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③ 성적서가 신청인에 의하여 소송, 중재, 화해 등 분쟁 절차에서 증거나 관련 자료로 사용되는 경우, 연구원은 신청인의 타당한 요구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필요한 지원과 설명을 제공한다. 다만 이러한 지원과 설명을 제공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④ 연구원이 ‘내부 참고용’임을 명시하여 발급한 성적서 또는 이에 준하는 참고용 성적서의 경우 신청인은 제품의 제조공정․품질관리 등 내부 참고용으로만 사용할 의무를 지며 신청인이 위 용도를 넘어 사업 목적 기타 대외 용도로 사용할 경우 연구원은 이와 관련된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9조 (성적서 기재사항의 의의)** ① 성적서의 ‘합격’ 기타 시험/검사결과를 표시한 기재는 시험/검사의 대상이 된 시료가 특정․불특정 제품 또는 그 모집단에서 적절하고 평균적 방법으로 채취된 시료 자체에 대한 표시로만 인정된다.

② 성적서의 그 어떠한 기재도 아래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거나 이를 보증하지 아니한다.

 1. 시료를 채취한 특정․불특정 제품 또는 그 제품이 속한 모집단의 성능․품질․효능․형상 등에 관한 사항

 2. 신청인 또는 신청인이 속한 단체․법인의 기술, 신용 등에 관한 사항

③ 성적서의 기재사항은 어떠한 경우에도 연구원을 신청인의 대리인, 보조자 기타 이해당사자로 삼거나 그밖에 신청인과 제3자 사이의 이해관계에 연구원을 관련시킬 수 있는 의미로 해석될 수 없다.

④ 성적서의 기재사항은 어떠한 경우에도 제1항의 의미를 넘어 제품의 제조자, 판매자의 계약상, 법률상의 책임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 없다.

⑤ 연구원, 시험검사원이 성적서 외의 문서나 다른 방법으로 신청인 기타 제3자에게 고지하거나 언론을 통해 공표한 시험/검사결과 역시 제1항 내지 제4항과 같다.

⑥ 제1항의 사항을 초과하는 사항이나 그 외의 사항과 관련된 추정이나 판단, 의사표시는 성적서와 무관하게 전적으로 그 판단, 의사표시를 하는 자의 재량과 책임 하에 있다.

**제6장 책임과 손해배상**

**제20조 (안전사고)** ① 시험/검사를 위하여 제공 또는 채취된 시료 및 시료를 채취하고 남아 보관 중인 제품 또는 물건 자체에서 도래하거나 그로부터 파생되는 일체의 위험은 연구원의 고의•중과실이 없는 한 신청인의 책임에 속한다.

② 시험검사원이 시험/검사를 실시하거나 시험/검사를 위하여 시료채취 등 준비행위를 하던 중에 안전사고를 당한 경우 그 사고의 원인이 전항의 위험과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는 증명이 없고, 시험검사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개입된 것이 아닌 한 신청인은 사고로 인하여 시험검사원이 입은 손실,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전항의 사고로 인하여 연구원이 시험검사원에게 적법하게 보상한 금원 중 신청인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신청인은 이를 변상할 책임이 있다.

**제21조 (제품의 파손)** ① 신청인의 의사에 의하여 소유권이 연구원에 유보된 시료 또는 제품, 물건이 시험/검사의 실시 기타 준비행위 중에 파손, 망실된 경우 그것이 시험검사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한 연구원 또는 시험검사원은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② 전항에서 연구원 또는 시험검사원이 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그 배상금액은 파손․망실된 당해 시료 또는 제품, 물건의 취득원가(수입품의 경우 송장가격) 또는 지불된 수수료의 3배 중 적은 금액으로 국한한다.

**제22조 (시험/검사의 오류에 따른 책임)** ① 제19조 제1항에 따라 성적서의 ‘합격’ 기타 시험/검사결과를 표시한 기재는 그 시험/검사의 직접 대상이 된 시료 자체에 대한 표시로만 인정되고 제19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표시․보증하지 아니하므로, 연구원의 귀책사유에 의한 시험/검사의 오류가 있는 경우에도, 신청인 또는 제3자가 성적서의 기재사항을 제19조 제2항 각 호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표시․보증하는 취지 그밖에 제19조 제1항의 규정을 넘는 취지로 인식․간주․이용함으로써 발생하게 된 신청인 또는 제3자의 손실․손해(신청인 또는 제3자가 그와 같은 취지로 인식․간주․이용하여 이루어진 제품의 양산, 제조설비․공정의 투자․변경, 거래계약의 체결 등과 관련하여 발생한 신청인 또는 제3자의 손실․손해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제5조 제3항, 제11조 제3항, 제13조 제2항 등 시험/검사의 오류가 신청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발생하였고, 연구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연구원은 시험/검사의 오류에 따른 직․간접의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하여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및 전항은 연구원이 발급한 성적서 기타 시험/검사 결과를 사용하거나 이와 관련되어 일정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신청인 외의 자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④ 신청인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책임 배제가 성적서 기타 연구원의 시험/검사 결과는 제19조 제1항의 한정된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이를 초과하는 사항이나 그 외의 사항과 관련된 추정이나 판단, 의사표시는 전적으로 그 판단, 의사표시를 하는 자의 재량과 책임 하에 있는 점 및 시험/검사는 언제나 오류를 내포할 수 있다는 불가피성에 기인한 것임을 이해하고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⑤ 신청인은 연구원의 귀책사유와 무관하게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시험/검사의 오류를 사유로 수수료 등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제23조 (구상)** 시험/검사의 오류가 제5조 제3항, 제13조 제2항 기타 신청인의 부주의나 과실, 제18조 제1항을 위반한 성적서의 무단 사용 기타 이 약관 규정의 위배 등 신청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신청인은 연구원이 신청인의 귀책사유에 따른 시험/검사의 오류로 인하여 제3자에게 이행한 보상금, 배상금 기타 소송비용(변호사보수 포함)을 변상할 책임이 있다.

**제24조 (그 밖의 법적 책임 및 소멸시효)** ① 제20조 내지 제22조의 면책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연구원, 시험검사원의 불법행위, 채무불이행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원이 신청인에게 부담하게 되는 손해배상 등 책임은 연구원, 시험검사원 기타 피용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것이 아닌 한 면책한다.

**제7장 약관의 효력, 해석, 분쟁 해결 등**

**제25조 (약관의 적용과 효력)** ① 이 약관을 적용함에 있어 신청서․계약서에서 달리 정함이 없거나 연구원의 특별약관에 정함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약관이 적용된다.

② 연구원의 적법한 대리권을 가지지 않은 시험검사원과 신청인 사이의 그 어떤 합의와 계약으로도 이 약관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그 효력을 제한할 수 없다. 이 약관의 배제는 오로지 연구원 원장 명의의 서면 합의에 의하여서만 가능하다.③ 약관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수정하는 경우에도 전항과 같다. ④ 이 약관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변경․수정하는 특별약관, 서면 합의가 대한민국의 법령에 반하는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제26조 (준거법․언어)** ① 이 약관 및 약관이 적용되는 계약․협약․협정 기타 연구원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는 일체의 서면은 한국법을 준거법으로 하여 한국어로 체결․작성되어야 한다.

② 전항의 약관․계약․협약․협정․서면 등의 해석에 있어서도 한국의 법령이나 판례․상관습을 준거로 한다.

③ 제1항의 약관․계약․협약․협정․서면 등이 외국어로 작성되거나 번역되는 경우에도 그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는 한국어로 작성된 것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을 위배하여 외국법 및 외국어를 준거법 또는 언어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다.

**제27조 (분쟁의 해결절차 및 관할)** ① 이 약관 또는 약관이 적용되는 시험/검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일체의 분쟁은 1차로 당사자간의 조정, 중재, 화해 등 자발적인 노력을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

② 전항의 분쟁과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그 전속적 관할법원으로 한다. 신청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별도 합의를 통해 전속관할법원을 정할 수 있다.

**개인정보 활용을 위한 이용자 동의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우리 연구원은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① 시험/검사 제공에 관한 계약 이행 및 시험/검사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

   - 시험/검사 등 연구원의 시험/검사 제공 관련 신청, 변경, 성적서 발송, 회원가입, 시험/검사 관련 문의 등을 포함한 이용계약 관련 사항의 처리 및 기타 시험/검사 관련 이메일, SMS, FAX 등을 통한 정보제공 사항

   - 대금 결제, 청구서 발송, 전자세금계산서 청구, 요금 추심 등 요금 결제 및 정산에 관한 업무

② 고객 관리 : 시험/검사 이용에 따른 본인확인, 개인 식별, 불량회원의 부정 이용 방지와 비인가 사용 방지, 가입 의사 확인, 가입 및 가입횟수 제한, 연령확인, 불만처리 등 민원처리, 고지사항 전달

③ 마케팅 및 광고에 활용 : 우리 연구원 소식 및 신규 사업 소개,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시험/검사 제공 및 광고게재, 접속 빈도 파악, 회원의 시험/검사 이용에 대한 통계, 이벤트 등 광고 성 정보전달, 설문조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① 수집항목

   - 계약자의 성명, 유무선 전화번호, 팩스번호, 주소, 이메일 주소, 회원아이디, 비밀번호

   - 법정대리인의 성명, 유무선 전화번호, 팩스번호, 주소

   - 요금납부자의 성명, 청구지 주소, 유무선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 이용 중 생성정보 : 시험/검사 이용기록, 접속 로그, 쿠키, 접속 IP 정보, 결제 기록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우리 연구원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예외 없이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4.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 이용자는 수집하는 개인정보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에는 회원가입 및 일부 시험/검사 제공이 제한됩니다.

**5. 개인정보 제공**

우리 연구원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원칙적으로 외부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1) 이용자들이 사전에 동의한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본 약관 외의 개인정보 활용과 관련한 기타 사항은 연구원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의해 처리되며, 연구원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연구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KOTITI 홈페이지(http://www.kotiti-global.com)의 하단 개인정보 처리방침 링크

|  |
| --- |
| KOTITI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
|  |
| KOTITI시험연구원은『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에 의거하여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고 있습니다.**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1.1 서비스 신청 시 신청인에 대한 신원확인1.2 신청한 서비스 관련 변동사항 전달 및 처리결과 전송1.3 서비스 신청 건에 대한 요금의 결제 및 정산1.4 연구원 서비스 소개 및 영업활동**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2.1 신청인의 이름2.2 주소2.3 전화번호2.4 휴대폰 번호2.5 팩스 번호2.6 전자우편 주소**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5년**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신청인은 KOTITI시험연구원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해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동의하지 않는 경우, KOTITI시험연구원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5. 개인정보의 제공**KOTITI시험연구원은 수집된 개인정보를 신청이 신청한 서비스 업무 용도에만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나, 아래의 경우,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5.1 신청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5.2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2항에 따른 경우\* 본인은 위와 같은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20 년 월 일 성명: (인)**KOTITI시험연구원 귀하** |
| QPF-02-04(rev.01) *KOTITI* |